

## 〈별표49〉 갑상선질환 분류표

- ① 약관에 규정하는 갑상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2020-175호, 2021.1.1.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.

분류항목	분류번호
1. 선천성 요오드결핍증후군	E00
2.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갑상선장애 및 동류의 병태	E01
3.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	E02
4.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	E03
5. 기타 비독성 고이터	E04
6. 갑상선독증[갑상선기능항진증] └(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(E05.0+))	E05 └(H06.2)
7. 갑상선염	E06
8. 갑상선의 기타 장애	E07
9.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,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,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	E89.0

주)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갑상선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
-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-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,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.
-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.